

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

□ 제안이유

지방공사·공단의 설립권이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되는등 지방공기업법(법률 제5708호 1999. 1. 29)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정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한 내용을 수정, 보완하므로써 시설관리공단을 내실있게 운영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를 받던 것을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함.(안제5조)
- 이사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면하던 것을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던 것을 시장이 임명토록 함.(안제7조)
-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(안제8조)
- 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.(안제9조)
- 공단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될 경우 대표권을 제한 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함.(안제13조)

□ 검토의견

법령 적합성 검토

- 지방공기업법 및 동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 설립
인가권이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되
었음
- 이에 따라 동 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및 운영하기 위해
기존의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
- 현행조례 제정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제17조2항의 사업운영으로
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는 규정은 행정자치부
공기업과에 질의한 결과 지방공기업의 독립채산제 원칙에 위배
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음
- 따라서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2항에 의한 것으로 법
령상 적합하다고 생각됨
- 다만, 권고안이지만 행정자치부 지방공단 설립지침에 의하면
지방공단 설립절차에 법인설립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담당국
장, 지방의회의원, 대상사업 전문가등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
나 파주시의 경우 이 절차를 생략했음. 법인설립심사 위원회를
구성하여 운영했을 경우 지방의회 의원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
견 수렴 및 법인 설립에 관한 타당성확보에 순기능을 했을 것
으로 생각됨

내용적 타당성 검토

-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, 지방공단 등 3가지 종류가 있음
- 지방공기업을 운영하는 이유는 공공행정과 사기업 각각의 장점인 공익성과 경영성을 효과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것임
- 그중에서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책임경영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
-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시 사업을 위탁 대행하는 것으로 공단의 운영에 있어 경영성이 무엇보다 요구되어짐
- 따라서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채용에 있어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